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4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이봉준,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용일,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신복자,  
유만희, 이영실, 이원형,  
이희원, 최민규, 최진혁  
의원(18명)

## 1. 제안이유

- 최근 지하철, 도로, 하수도 등 굴착공사로 인해 상수도관 누수사고와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수도시설이 손괴 되었을 경우, 실제 발생한 공사비(직접공사비)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사고 복구를 위한 공사비 이외에 자산가치 훼손, 시설복구 경비 등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안정적인 수도시설 관리와 시민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구분함(안 제2조).
- 나. 수도시설 잔존가치 환산한 '간접복구비' 적용한 산정기준 마련함(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원상복구공사”를 “직접복구비 및 손괴 이전 수도시설에 의 잔존가치를 환산한 간접복구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급수자원 비용”이란 급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병물 지원에 드는 비용 제3조제2항제1호 중 “설계도서”를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급수자원 비용

제4조제2항제1호 중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담금의 간접복구비는 손괴 이전의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환산비용을 부과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u>원상복구공사</u>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p> <p>3. ~ 7.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생 략)</p> <p>②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원상복구비(<u>설계도서</u>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p> <p>2. ~ 10.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직접복구비 및 손괴 이전 수도시설에의 잔존가치를 환산한 간접복구비</u>----</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급수자원 비용</u>”이란 급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u>병물 지원</u>에 드는 비용</p> <p>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u>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설계도서</u> ----- --</p> <p>2. ~ 10.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정의)제2호의 원상복구공사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제9호에 부담금의 간접복구비는 손괴 이전의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환산비용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